

대구예술대학교 강사 특별채용시행세칙

(제정 2019.07.26. 법인이사회)

제1조 (목적) 본 세칙은 대구예술대학교(이하 “우리 대학교”라 한다) 강사임용규정에 의거 강사 특별채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특별채용 대상) 특별채용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하나로 한다.

1.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·출산휴가·휴직·파견·징계·6개월 이하 연구년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·퇴직·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
2. 공개채용 절차에 의해 임용이 예정된 강사 및 겸임교원 등이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초 임용예정자의 다음 순위 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함에도 다음 순위자가 없거나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

제3조 (절차) ① 강사심사위원회는 특별채용을 위한 적격자를 발굴하여 추천하여야 한다.
② 특별채용 강사는 강사심사위원회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.

제4조 (임용기간) ① 제2조 제1호에 의거 임용된 강사의 임용기간은 6개월 이하로 한다.
② 제2조 제2호에 의거 임용된 강사의 임용기간은 공개채용으로 임용한 경우와 같다.

제5조 (제출서류) 강사 임용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강사 특별채용 추천서
2. 연구실적 목록 :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실적(예정은 제외)
3. 학·석·박사 학위취득(예정)증명서 각 1부
4. 경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
5.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 각 1부
6. 외국박사학위신고증 사본 1부 (해당자)
7. 전공 관련 자격·면허증 사본 각 1부 (해당자)

제6조 (기타)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채용 관련 사항은 우리 대학교 강사신규임용시행세칙에 따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세칙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임용자 부터 적용 한다.